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83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31.

발 의 자 : 이해식 · 모경중 · 허영
이수진 · 장경태 · 양부남
박상혁 · 서미화 · 문정복
최기상 · 오세희 · 윤준병
최혁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의원의 전문성이 미흡한 점과 국회의원정수도 비례대표의원이 전체의 20%를 웃도는 점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비례대표시·도의원과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를 각각 전체의원정수의 20%로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4항 전단 중 “100分の 10”을 “100분의 20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3항 전단 중 “100분의 10”을 “100분의 2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비율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22條(시·도회의의 의원정수) ① ~ ③ (생략) ④ 比例代表市·道議員定數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地域區市·道議員定數의 <u>100분의 10</u>으로 한다. 이 경우 端數는 1로 본다. 다만, 算定된 比例代表市·道議員定數가 3人 미만인 때에는 3人으로 한다. 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) ① · ② (생략) ③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 의원정수는 자치구·시·군의원정수의 <u>100분의 10</u>으로 한다.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.	第22條(시·도회의의 의원정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<u>100분의 20</u>-----. -----. ----- ----- -----. 제23조(자치구·시·군의회의 의원정수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<u>100분의 20</u>-----. -----.